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424 발의연월일: 2022. 9. 19.

발 의 자: 박재호·김정호·이상헌

윤관석 · 최인호 · 민병덕

서동용 • 이병훈 • 노웅래

이용우 • 박찬대 • 김병기

송재호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의 안전성 확보의무,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머지포인트 사태로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회사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보호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등의 이사회의 금융보안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하고,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자산의 보안 등을 총괄하는 금융보안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이용자 예탁금 보호를 위한 별도관리 및 이용자 우선변제권을 도입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금융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금융보안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금융보안책임자는 금융보안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위원회에 매년 제출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 나. 금융회사등의 이사회가 금융보안 체계, 전자금융업무의 지속성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금융보안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함(안 제21조의7 신설).
- 다.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받은 금전을 은행 등에 별도관리하도록 하고, 해당 금전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 등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를 보장함(안 제21조의8 신설).
- 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자 등에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그 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특례를 둠(안 제27조의2 신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하여"를 "하고 금융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로 한다. 제2조에 제23호 및 제24호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3. "정보자산"이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그로부터 정보처리의 위탁을 받은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 ·운영하는 정보, 전자금융기반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4. "금융플랫폼"이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 가.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대리, 중개나 주선을 하는 행위
 - 나.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교분석, 추천 등을 하는 행위
 - 다.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로부터 요청을 받아 이용자에게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나 정보제공 등을 하는 행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3조제3항제3호 중 "정보보호최고"를 "금융보안"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전자금융거래가"를 "전자금융거래와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금융거래의"를 "전자금융거래와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의"로, "인증방법"을 "인증방법, 정보자산의 보호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업무의 내용,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등의 특성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1조의2의 제목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을 "(금융보안책임자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전자금융업무,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및 정보자산의 보안(이하 "금융보안"이라 한다)"으로, "정보보호최고"를 "금융보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감안"을 각각 "고려"로, "정보보호최고"를 각각 "금융보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보호최고"를 "금융보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사고"를 "사고·제21조의5에 따른 침해사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제1항에 따른 금융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제6항에 따른 제출의 방법 및 절차"로 한다.

5. 제21조의7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사회의 결정을 지원하는

업무

- ⑤ 제1항에 따른 금융보안책임자는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 자의 금융보안의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 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⑥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5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표자의 확인·서명을 받아 매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5제1항 중 "마비"를 "마비되거나 정보자산이 유출"로 한다. 제3장에 제21조의7·제21조의8 및 제2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하다.

제21조의7(이사회의 책무 등) ① 금융회사등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등이 「상법」 제17 0조에서 정한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법인의 사무집행 을 결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사무집행기관"이라 한다)이 결정 할 수 있다.

- 1. 전사적(全社的)인 금융보안 체계에 관한 사항
- 2. 전자금융업무의 지속성 유지에 관한 사항
- 3. 전자금융거래의 사고·침해사고 등에 따른 피해 및 그 확산의 방 지에 관한 기본사항
- 4.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 및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의 안전성과 신 뢰성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은 사무집행

- 기관의 구성·운영 및 권한 등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 및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금융위원회는 사무집행기관의 구성·운영 및 권한 등이 전자금 융거래 및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집행기관의 구성·운영 및 권한 등에 관하여 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의8(이용자예탁금의 보호) ①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예탁금(이용자로부터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이용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예치·신탁 또는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한다)하여야 한다.
 - 1. 제28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 금융업자: 이용자예탁금 전액
 - 2. 그 외의 전자금융업자: 이용자예탁금 중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②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이용자예탁금을 별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예탁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 ③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별도 관리된 이용자예탁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 1. 국채증권의 매수
- 2. 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 증권의 매수
-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
- 4. 그 밖에 이용자예탁금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는 이용자 예탁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 ⑤ 전자금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는 이용자예탁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별도관리한 이용자예탁금을 인출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금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과 이용자예탁금의지급시기ㆍ지급장소, 그 밖에 이용자예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1.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말소
- 2. 해산의 결의
-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 4.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①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같은 항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로부터 이용자예탁금을 직접 지급받기에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 이용자예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기관등이 이용자에게 이용자예탁금을 지급하면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기관등의 지급채무 및 이용자에 대한 전자금융업자의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각각 소멸한 것으로 본다.
- ⑧ 관리기관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을 통하여 이용자예탁금을 별도관리하고 있는 전자금 융업자에게 별도관리된 이용자예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⑨ 이용자예탁금을 별도관리한 전자금융업자는 관리기관등이 제7항 에 따른 이용자의 청구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 이용자에 관한 정보

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기관등에 제공할 수 있다.

- 1.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2. 제7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용자예탁금에 관한 정보
-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① 이용자예탁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예탁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 ① 제1항에 따른 별도관리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의 행사방법, 제10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의2(금융플랫폼 이용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특례) 금 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그 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이용 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를 준용한다.
 - 1.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 그 밖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업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정보보호최고"를 각각 "금융보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보안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융보안책임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금융거 | 제1조(목적) |
| 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u>하여</u> | <u>하고 금</u> |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 | 융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
| 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 | |
| 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 | |
| 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 | |
| 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 |
|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 |
| 한다.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제2조(정의) |
|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 1. ~ 22. (생 략) | 1. ~ 22.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23. "정보자산"이란 금융회사, |
| | 전자금융업자 등 대통령령으 |
| | 로 정하는 기관 및 그로부터 |
| | 정보처리의 위탁을 받은 자 |
| | <u>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u> |
| | 는 정보, 전자금융기반시설 |
| |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
| | <u>하는 것을 말한다.</u> |
| <u><신 설></u> | 24. "금융플랫폼"이란 금융회사 |
| |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 |
| | 를 대상으로 금융상품 및 서 |

제3조(적용범위) ① • ② (생 략)

③ 금융회사 중 전자금융거래 의 빈도, 회사의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비스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u>가.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u> <u>한 대리, 중개나 주선을 하</u> 는 행위

<u>나.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u> <u>한 비교분석, 추천 등을 하</u> 는 행위

다.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로부터 요청을 받아 이용 자에게 금융상품 및 서비 스에 대한 홍보나 정보제 공 등을 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

 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행위

제3조(적용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 (3) | |
|-----|--|
| | |
| | |
| | |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2. (생략)
- 3. 제21조의2의 <u>정보보호최고</u>책 임자 지정
- 4. (생략)
-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 금 경 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가 안 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 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 여야 한다.
 - ②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장치, 소요경비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한다. <후단 신설>

| • |
|-----------------------------------|
| 1. • 2. (현행과 같음) |
| 3 <u>금융보안</u> |
| |
| 4. (현행과 같음) |
|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 |
| 전자금융거래와 정 |
| 보자산의 관리 · 운영이 |
| |
| |
| |
| ~~~. |
| ② <u>전자금융거래</u> |
| <u>와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의</u> |
| |
| |
| |
| |
| |
| |
| -인증방법, 정보자산의 보호 등 |
| |
| ································· |
| |
|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업 |
| 무의 내용, 전자금융거래의 빈 |
| 도 등의 특성에 따라 그 기준을 |
| 달리 정할 수 있다. |

| (3) | • | 4 | (생 | 략) |
|-----|---|---|----|----|
| | | | | |

제21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 금융업자는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 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u>감</u> 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u>정보보호최고</u>책임자를 임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 호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u>감</u> 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u>정보보호최고</u>책임자는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 ④ 제1항에 따른 <u>정보보호최고</u>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 3. (생략)

| (3) • (4) (현행과 같음) |
|--------------------|
| 세21조의2(금융보안책임자 지정 |
| <u>=</u>) ① |
| 전자금융업무, 그 기반 |
| 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및 정보 |
| 자산의 보안(이하 "금융보안"이 |
| <u>라 한다)</u> 글 |
| <u> 융보안</u> |
| |
| ② <u>J</u> |
| <u>러</u> |
| |
| <u> 금융보안</u> |
| |
| |
| |
| ③ <u>고</u> |
| <u>려</u> |
| |
| <u> 금융보안</u> |
| |
| |
| ④ <u>금융보안</u> |
| |
| |
| 1. ~ 3. (현행과 같음) |
| |

및 조치

<신 설>

5. (생략) <신 설>

<신 설>

⑤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는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 4. 전자금융거래의 사고 예방 4. -----사고·제21 조의5에 따른 침해사고-----
 - 5. 제21조의7제1항 각 호의 사 항에 관한 이사회의 결정을 지원하는 업무
 - 6. (현행 제5호와 같음)
 - ⑤ 제1항에 따른 금융보안책임 자는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 금융업자의 금융보안의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 검하여야 한다.
 - ⑥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u>는 제5항에</u> 따른 점검 결과를 대표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 매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금융보안책임 자의 자격요건, 제6항에 따른 제출의 방법 및 절차-----

제21조의5(침해사고의 통지 등) 제21조의5(침해사고의 통지 등)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 · <u>마</u> <u>비</u>되는 등의 사고(이하 "침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 는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생략)<신 설>

| <u>п} н</u>] |
|---------------|
| 되거나 정보자산이 유출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7(이사회의 책무 등) ① 금융회사등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등이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법인의 사무집행을 결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사무집행기관"이라 한다)이 결정할수 있다.

- 1. 전사적(全社的)인 금융보안 체계에 관한 사항
- 2. 전자금융업무의 지속성 유지에 관한 사항
- 3. 전자금융거래의 사고·침해 사고 등에 따른 피해 및 그 확산의 방지에 관한 기본사 항
- 4.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 및 정

보자산의 관리·운영의 안전 성과 신뢰성에 관하여 중요 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은 사무집행기관의 구성·운영 및 권한 등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 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금 융거래 및 정보자산의 관리· 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금융위원회는 사무집행기관의 구성·운영 및 권한 등이 전자금융거래 및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집행기관의 구성·운영 및 권한 등에 관하여 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u>④</u>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8(이용자예탁금의 보호) ①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예탁 금(이용자로부터 전자지급거래 와 관련하여 받은 금전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 상의 이용자예탁금을 고유재산 과 구분하여 「은행법」에 따 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융회사(이하 "관리기관"이 라 한다)에 예치・신탁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 다.

- 1. 제28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금융위원회에 등록 한 전자금융업자: 이용자예탁 금 전액
- 2. 그 외의 전자금융업자: 이용자예탁금 중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②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이용자예탁금을

별도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이 용자예탁금이 이용자의 재산이 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 ③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별도관리된 이용자예탁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 1. 국채증권의 매수
- 2. 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융회사가 지급을 보 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
- 4. 그 밖에 이용자예탁금의 안

 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

 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는 이용자예탁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 ⑤ 전자금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는 이용자예탁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별 도관리한 이용자예탁금을 인출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아 이용 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금융업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과 이용자예탁금의 지 급시기 · 지급장소, 그 밖에 이 용자예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말 소
- <u>2. 해산의 결의</u>
-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4.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용업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발생한 경우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는 같은 항에 따라 전자금융업 자로부터 이용자예탁금을 직접 지급받기에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 기관등"이라 한다)에 이용자예 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등이 이용자 에게 이용자예탁금을 지급하면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기관 등의 지급채무 및 이용자에 대 한 전자금융업자의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각각 소멸한 것으 로 본다.

⑧ 관리기관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에는 해당 관리기관을 통하여 이용자예탁금을 별도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업자에게 별도관 리된 이용자예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⑨ 이용자예탁금을 별도관리한전자금융업자는 관리기관등이제7항에 따른 이용자의 청구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 이용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기관등에 제공할 수있다.

- 1.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 보
- 2. 제7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 급하여야 할 이용자예탁금에 관한 정보
-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① 이용자예탁금에 관한 청구 권을 가지는 이용자, 그 청구권 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는 전자금융업자 가 이용자예탁금으로 별도관리 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 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 ① 제1항에 따른 별도관리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의 행사방법, 제10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대해서

<신 설>

제51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 2.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2. -------을 위반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보안------

|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제27조의2(금융플랫폼 이용 등에 |
|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특 |
| 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 |
| 자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 |
| 자금융거래에 관한 업무를 처 |
| 리하도록 함으로써 그 자가 그 |
| 업무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손 |
| 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민 |
| 법」 제756조를 준용한다. |
| 1.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로 |
|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2. 그 밖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 |
| 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 |
| 거래에 관한 업무를 제공하 |
| 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
| 하는 자 |
| 제5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 ② |
| |
| |
| 1. (현행과 같음) |
| 2 |
| <u>금융보안</u> |
| |
| |

| | 으로 | 지정 | 하지 | 0}1 | 니한 | 자 | | |
|----|-----|-----|------|-----|-----|-----|-----|---|
| 3. | 제2 | 1조의 | 12제3 | 3항을 | - 위 | 반 | 하 | 여 |
| | 같은 | 조 | 제4호 | 항의 | 업무 | 子 . | 외 | 의 |
| | 다른 | 정 | 보기 | 술부 | 문 | 업. | 무 | 를 |
| | 정보. | 보호 | 최고 | 책임기 | 자로 | | 하 | 여 |
| | 금 2 | 겸직さ | 하게 | 하기 | 나 | 겸 | 직 ' | 한 |
| | 자 | | | | | | | |

| 4. ~ 1. (% 4 | 4. ∼ | 7. | (생 | 략 |
|--------------|-------------|----|----|---|
|--------------|-------------|----|----|---|

| (3) | • | (4) | (생 | 략) |
|-----|---|------------|----|----|
| | | | | |

| 3 |
|------------------|
| |
| |
| 금융보안 |
| |
| |
| 4. ~ 7. (현행과 같음) |
| ③・④ (현행과 같음) |